

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주택관리부동산투자회사

2019년 제6차 이사회 의사록

1. 일 시 : 2019년 12월 20일(금) 오전 10시
2. 장 소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(권선동) 소재 본점 회의실
3. 출석인원 : 이사총수 3 명 출석이사수 3명
감사총수 1 명 출석감사수 1명

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 390 조 제 4 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키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.

■ 의안 1 : 기존 대주간 합의서 해지의 건

의장은 정관 제 37 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체결된 대주간 합의서 해지가 필요함을 배부한 이사회자료를 통하여 설명하고,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,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 1 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■ 의안 2 : 기존 대출약정서 해지의 건(미인출수수료 지급)

의장은 정관 제 37 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체결된 대출약정서 해지가 필요함을 배부한 이사회자료를 통하여 설명하고,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,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 2 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■ 의안 3 : 기존 표준사업약정서(PF 보증) 해지의 건(Tr. A, B, C)

의장은 정관 제 37 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체결된 표준사업약정서(PF 보증) 해지가 필요함을 배부한 이사회자료를 통하여 설명하고,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,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 3 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■ 의안 4 : 기존 보증채무 약정서 해지의 건(Tr. A, B, C)

의장은 정관 제 37 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날인 제출한 보증채무약정서 해지가 필요함을 배부한 이사회자료를 통하여 설명하고,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,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 4 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■ 의안 5 : 임대리츠 표준사업약정서 변경체결의 건

의장은 정관 제 37 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체결된 임대리츠 표준사업약정서 변경체결이 필요함을 배부한 이사회자료를 통하여 설명하고,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,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 5 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■ 의안 6 : 신규 대주간 합의서 체결의 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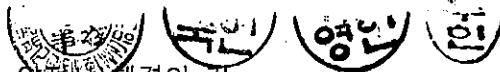
의장은 정관 제 37 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한 신규 대주간합의서 체결이 필요함을 배부한 이사회자료를 통하여 설명하고,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,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 6 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■ 의안 7 : 신규 대출약정서 체결의 건

의장은 정관 제 37 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한 신규 대출약정서 체결이 필요함을 배부한 이사회자료를 통하여 설명하고,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,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 7 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■ 의안 8 : 신규 표준사업약정서(PF 보증) 체결의 건

의장은 정관 제 37 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한 신규 표준사업약정서 (PF 보증) 체결이 필요함을 배부한 이사회자료를 통하여 설명하고,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,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 8 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

■ 의안 9 : 신규 보증채무 약정서 체결의 건

의장은 정관 제 37 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한 신규 보증채무 약정서 체결이 필요함을 배부한 이사회자료를 통하여 설명하고,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,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 9 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■ 의안 10 : 공사도급계약 변경 체결의 건

의장은 정관 제 37 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인허가 추진을 위해 2019년 2월 기체결된 공사 도급계약을 변경하여 계약 체결하고자함을 배부한 이사회자료를 통하여 설명하고,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,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 10 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■ 의안 11 : 정관의 변경의 건

의장은 정관 제 37 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우선주 수익률 변동 사항등 정관 수정이 필요함을 배부한 이사회자료를 통하여 설명하고,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,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 11 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■ 의안 12 : 부동산 개발사업계획 변경의 건

의장은 정관 제 37 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함을 배부한 이사회자료를 통하여 설명하고,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,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 12 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■ 의안 13 :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

의장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제안하고,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,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13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- 아 래 -

1. 임시주주총회 소집

- 개최일시 : 2019년 12월 23일(월) 오전 11시
- 개최장소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(권선동) 소재 본점 회의실

2. 부의안건

의 안 1. 기존 대주간 합의서 해지의 건

의 안 2. 기존 대출약정서 해지의 건(미인출수수료 지급)

의 안 3. 기존 표준사업약정서(PF 보증) 해지의 건(Tr. A, B, C)

의 안 4. 기존 보증채무 약정서 해지의 건(Tr. A, B, C)

의 안 5. 일대리조 표준사업약정서 변경체결의 건

의 안 6. 신규 대주간 합의서 체결의 건

의 안 7. 신규 대출약정서 체결의 건

의 안 8. 신규 표준사업약정서(PF 보증) 체결의 건

의 안 9. 신규 보증채무 약정서 체결의 건

의 안 10. 공사도급계약 변경 체결의 건

의 안 11. 정관의 변경의 건

의 안 12. 부동산 개발사업계획 변경의 건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 의안이 심의 종료되었음을 고하고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하다.

2019년 12월 20일

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 1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의 장 대 표 이 사 한 정 수



기타비상무이사 윤 성 국



기타비상무이사 정 도 영



감 사 김 수 현



배부자료 : 2019년 제 6 차 이사회 회의자료

